

### 부속서 7-가-3

#### 유럽연합 당사자

####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1. 아래의 유보 목록은 제7.7조 및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활동으로서 제7.18조 및 제7.19조에 따라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대해 제한이 적용되는 활동을 표시하고 그러한 제한을 명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제한이 적용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제한을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유럽연합 당사자는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하는(약속 안함으로 남아 있는) 경제활동에서 핵심인력에 대해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핵심인력 및 대졸연수생에 관한 약속은 그들의 일시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8조 및 제7.19조의 의미에서의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및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영역에 법적 주소를 보유할 필요)는,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핵심인력 및 대졸 연수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체류기간, 최저임금 및 단체임금협약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입국, 체류, 직업 및 사회안전 조치에 관한 유럽연합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모든 요건은 비록 아래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된다.

6.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아래의 목록은 설립에 관한 약속 목록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공공 독점과 배타적 권리의 존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8.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그 주요 기준은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공급될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그 지역에서의 관련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9. 아래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10.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모든 분야	<p align="center"><b>경제적 수요 심사</b></p> <p><b>불, 형:</b> 대졸연수생에 대해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됨.<sup>1)</sup></p>
모든 분야	<p align="center"><b>기업내 전근자의 범위</b></p> <p><b>불:</b>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각 불가리아 법인에 의해 고용된 유럽연합 시민 수의 연간 평균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 100명 미만이 고용된 경우, 기업내 전근자의 수는 인가를 조건으로 총 고용인 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음.</p> <p><b>형:</b> 대한민국의 법인에서 파트너인 자연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p>
모든 분야	<p align="center"><b>대졸연수생</b></p> <p><b>오, 독, 서, 프, 형</b>에 대해, 연수는 취득한 학사 학위와 연계되어야 함.</p>
모든 분야	<p align="center"><b>경영 이사 및 감사</b></p> <p><b>오:</b> 법인 지점의 경영 이사들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해야 함. 오스트리아 무역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지점 내의 자연인은 오스트리아에 거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p> <p><b>핀:</b> 민간 기업인으로서 무역을 행하는 외국인은 무역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연합 내에 영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유한회사의 경영 이사에 적용됨.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해야 함.</p> <p><b>프:</b> 산업, 상업 또는 기술적 활동의 경영 이사는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 인가가 필요함.</p> <p><b>루:</b> 상업회사의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p> <p><b>스:</b> 법인 또는 지점의 경영 이사는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p>
모든 분야	<p align="center"><b>인정</b></p> <p><b>유:</b> 학위상호인정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은 유럽연합 시민에게만 적용됨.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에서 규제되는 전문직서비스 영업을 할 권리는 다른 회원국에서 영업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sup>2)</sup></p>

1)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아니함.

2) 비유럽연합 국가 국민이 그들 자격에 대해 유럽연합 전 지역에 걸치는 자격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 제7.21조에 정의된 틀 내에서 협상된 상호인정협정이 필요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4. 제조업 <sup>3)</sup>	
H.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사업 (ISIC rev. 3.1: 22),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 제외 <sup>4)</sup>	<p><b>이:</b> 출판업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폴:</b> 신문 및 잡지의 편집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스:</b> 출판업자와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p>
6. 사업서비스	
A. 전문직서비스	
<p>a) 법률서비스 (CPC 861)<sup>5)</sup> 공증, “집행관 업무(<i>huissiers de justice</i>)” 또는 다른 “공무원 업무(<i>officiers publics et ministeriels</i>)”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p>	<p><b>오, 사, 서, 그, 리, 몰, 루, 슬:</b> (유럽연합 및 회원국) 국내법 업무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스페인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b>벨, 핀:</b> 법률대리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벨기에에서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i>Cour de cassation</i>)”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를 조건으로 함.</p> <p><b>블:</b> 대한민국 변호사는 상호주의 및 불가리아 변호사와의 협력을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률대리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음. 법률조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주가 요구됨.</p> <p><b>프:</b>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와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p>

3)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에 부수된 자문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4)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5)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해서만 인가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하나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측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그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그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p><b>형:</b>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거주요건과 함께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외국 변호사에 대해 법적 활동의 범위는 법률자문의 제공에 한정되며, 이러한 법률자문은 헝가리 변호사 또는 법무회사와 체결된 협력계약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함.</p> <p><b>라:</b> 형사 절차에서의 법률대리권이 유보된, 서약한 사무변호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법률자문서비스의 마케팅은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에 제한됨.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p> <p><b>룩:</b> 룩셈부르크 및 유럽연합 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p> <p><b>스:</b> 스웨덴의 변호사 직명 “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i>advokat</i>)”의 사용만을 위하여 필요한 변호사협회에의 가입은 거주요건을 조건으로 함.</p>
<p><b>b) 1.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b> (감사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 CPC 86213, CPC 86219 및 CPC 86220)</p>	<p><b>프:</b> 회계 및 회계장부정리 서비스의 제공은 외교부 장관과의 합의에서 경제금융산업 장관의 결정을 조건으로 함. 거주요건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p>
<p><b>b) 2. 감사서비스</b> (CPC 86211 및 회계서비스를 제외한 CPC 86212)</p>	<p><b>오:</b>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그리고 특정한 오스트리아법(예: 합자주식회사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등)에 규정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거주요건이 있음.</p> <p><b>서:</b>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그리고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닌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핀:</b>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p> <p><b>그:</b> 법정 감사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이:</b> 회사법에 관한 제8차 유럽경제공동체 지침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의 관리자, 이사 및 파트너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개별 감사인에 대해서도 거주요건이 있음.</p> <p><b>스:</b>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p>
<p><b>c) 세무자문서비스</b> (CPC 863)<sup>6)</sup></p>	<p><b>오:</b>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국적조건이 있음.</p> <p><b>불, 베:</b>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형:</b> 거주요건이 있음.</p>

6) 6.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d) 건축설계서비스</b> <b>및</b> <b>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b> (CPC 8671 및 CPC 8674)	<p><b>예:</b>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p> <p><b>불:</b>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p> <p><b>그, 형, 슬:</b> 거주요건이 있음.</p>
<b>f) 엔지니어링서비스</b> <b>및</b> <b>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b> (CPC 8672 및 CPC 8673)	<p><b>예:</b> 최소 1인의 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컨설턴트)가 에스토니아에 거주해야 함.</p> <p><b>불:</b>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간 경험이 있어야 함.</p> <p><b>슬:</b> 거주요건이 있음.</p> <p><b>그, 형:</b> 거주요건이 있음.(CPC 8673의 거주요건은 대졸연수생에게만 적용됨)</p>
<b>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서비스</b>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	<p><b>체, 이, 슬:</b> 거주요건이 있음.</p> <p><b>체, 루, 슬:</b>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b>벨, 룩:</b>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p> <p><b>블, 몰:</b> 국적조건이 있음.</p> <p><b>독:</b> 공공의 보건상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구체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 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요건이 요구됨.</p> <p><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p> <p><b>라:</b>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일정 지역에서의 의사 및 치과 의사에 대한 경제적 수요에 근거한 지방보건당국으로부터의 허가가 요구됨.</p> <p><b>폴:</b> 외국인에 의한 의료 업무를 위해 허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p> <p><b>포:</b> 심리학자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i) 수의료서비스</b> (CPC 932)	<b>불, 독, 그, 프, 형:</b> 국적조건이 있음. <b>체 및 슬:</b>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b>이:</b> 거주요건이 있음. <b>폴:</b>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은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b>j) 1. 조산원서비스</b> (CPC 93191의 일부)	<b>오:</b>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 <b>벨, 룩:</b>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b>사, 예, 루:</b>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연간 설정된 쿼터 내에서 접근이 가능함. <b>이:</b> 거주요건이 있음. <b>라:</b> 일정 지역에서의 조산원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 <b>폴:</b> 국적조건이 있음. 외국인은 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b>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b> (CPC 93191의 일부)	<b>오:</b>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오스트리아에서 전문직 개업을 하기 위해, 해당 인은 해당 직종에서 설립 전에 최소 3년간 영업을 해왔어야 함. <b>벨, 프, 룩:</b> 대졸연수생의 경우,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b>사, 체, 예, 루, 슬:</b> 외국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가 요구됨. <b>형:</b> 국적조건이 있음. <b>덴:</b>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한된 인가가 18개월 까지 부여될 수 있고 거주가 요구됨. <b>사, 체, 그, 이:</b>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결정은 지역적 결원 및 부족을 조건으로 함. <b>라:</b> 일정 지역에서의 간호사 총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적 수요의 조건에 따라 지방보건당국이 인가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b> (CPC 63211) <b>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sup>7)</sup></b>	<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설정된 쿼터 내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프랑스의 약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접근이 가능함. <b>독, 그, 슬:</b> 국적조건이 있음. <b>형:</b>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CPC 63211)를 제외하고 국적조건이 있음. <b>이, 포:</b> 거주요건이 있음.
<b>D. 부동산서비스<sup>8)</sup></b>	
<b>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b> (CPC 821)	<b>프, 형, 이, 포:</b> 거주요건이 있음. <b>라, 물, 베:</b> 국적조건이 있음.
<b>b)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b> (CPC 822)	<b>덴:</b>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요건이 있음. <b>프, 형, 이, 포:</b> 거주요건이 있음. <b>라, 물, 베:</b> 국적조건이 있음.
<b>표.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b>	
<b>e) 개인·가정물품 관련</b> (CPC 832)	<b>유:</b>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f) 통신장비임대</b> (CPC 7541)	<b>유:</b>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7)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됨.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처방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8)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F. 그 밖의 사업서비스</b>	
<b>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b> (CPC 8676)	<b>이, 포:</b> 생물학자 및 화학분석가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b>f) 농업, 수렵업,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b> (CPC 881의 일부)	<b>이:</b> 농경제학자 및 “농업기술자( <i>periti agrari</i> )”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b>j) 2. 경비서비스</b>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b>벨:</b> 경영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b>블, 사, 체, 에, 라, 리, 몰, 폴, 루, 베, 슬:</b>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b>덴:</b> 경영자 및 공향수위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b>서, 포:</b> 전문 인력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프:</b> 경영 이사 및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이:</b> 경비서비스 및 귀중품 운송을 위해 필요한 인가를 얻기 위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b>k) 과학·기술 관련 자문서비스</b> (CPC 8675)	<b>블:</b>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독:</b> 공적으로 지명된 조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프:</b> 재산권 설립 및 토지법과 관련된 “조사” 활동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이, 포:</b> 거주요건이 있음.
<b>l) 1. 선박 유지 및 보수</b> (CPC 8868의 일부)	<b>몰:</b>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라: 국적조건이 있음.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유: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유지 및 보수에 대하여,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sup>9)</sup>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p>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다음은 제외: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벨, 독, 덴, 서, 프, 그, 형, 아, 이, 룩, 몰, 네, 폴, 포, 루, 스, 영  개인·가정물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보석류 제외)에 대해, 블: CPC 63301, 63302, 63303의 일부, 63304, 63309  CPC 633, 8861-8866에 대해, 오  CPC 633, 8861-8866에 대해, 예, 핀, 라, 리  CPC 633, 8861-8865에 대해, 체, 슬  CPC 633, 8861, 8866에 대해, 베</p>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사, 예, 몰, 폴, 루, 베: 전문가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n) 사진서비스 (CPC 875)	<p>라: 전문사진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폴: 항공사진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스: 출판업자 및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베: 국적조건이 있음.

9)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b>핀:</b> 공인 번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b>덴:</b> 달리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에 의해 면제되지 아니하는 한,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r) 3. 수급대리서비스 (CPC 87902)	<b>벨, 그, 이:</b> 국적조건이 있음.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b>벨, 그, 이:</b> 국적조건이 있음.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sup>10)</sup>	<b>유:</b>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b>불:</b> 외국인인 전문가는 건설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험이 있어야 함.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전쟁물자의 유통은 제외)	
<b>C. 소매서비스<sup>11)</sup></b>	
c) 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	<b>프:</b> 담배판매자(즉, buraliste)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0.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b>A. 초등교육서비스</b> (CPC 921)	<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 <b>이:</b>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그:</b>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0)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11) 사업서비스의 6.B. 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B. 중등교육서비스</b> (CPC 922)	<p><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p> <p><b>이:</b> 국가 공인 졸업장을 발행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그:</b> 교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라:</b>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b>C. 고등교육서비스</b> (CPC 923)	<p><b>프:</b> 국적조건이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교육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의 인가를 얻을 수 있음.</p> <p><b>체, 슬:</b>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 (CPC 92310)를 제외한 고등교육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이:</b>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서비스 공급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p><b>덴:</b> 교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p>
<b>12. 금융서비스</b>	
<b>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b>	<p><b>오:</b> 지점의 경영진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2인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함.</p> <p><b>에:</b> 직접보험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자본참여를 한 보험 합자주식회사의 경영진에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 보유 비율과 비례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영진 구성원의 반을 초과할 수 없음. 현지법인 또는 독립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에스토니아에 영주해야 함.</p> <p><b>서:</b>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또는 그 대체 요건으로 2년의 경험)이 있음.</p> <p><b>이:</b> 보험계리업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p> <p><b>핀:</b> 달리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회사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달리 회사가 유럽연합에 본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총대리인은 핀란드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p>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 제외)</b>	<b>불:</b> 집행 이사 및 경영 대리인에 대하여 불가리아에서의 영주가 요구됨. <b>핀:</b>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면제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여수신 기관의 경영 이사 및 최소 1인의 감사는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중개인(개인)은 유럽연합에 거주지를 가져야 함. <b>이:</b> “금융 판매원(promotori di servizi finanziari)”에 대해 유럽연합 회원국 영역 내의 거주요건이 있음. <b>리:</b> 최소 1인의 관리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어야 함. <b>폴:</b> 은행 임원 중 최소 1인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b>	
<b>A. 병원서비스 (CPC 9311)</b> <b>B. 구급차서비스 (CPC 93192)</b> <b>C.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CPC 93193)</b> <b>E. 사회서비스 (CPC 933)</b>	<b>프:</b>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인가 시 국내 관리인의 이용가능성이 고려됨. <b>라:</b> 의사, 치과 의사, 조산원,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b>폴:</b> 외국인의 의료 업무에는 인가가 요구됨. 외국인 의사는 직능 단체 내에서 제한된 선거권을 가짐.
<b>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b>	
<b>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b> <b>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sup>12)</sup></b>	<b>불:</b>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

12)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7.E.a)의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b> (CPC 7471)	<b>불:</b> 불가리아 회사의 자본 중 공공(국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관리자의 수는 불가리아 시민권자인 관리자의 수를 초과하지 아니함.
<b>C. 관광안내서비스</b> (CPC 7472)	<b>불, 사, 서, 프, 그, 형, 이, 리, 물, 폴, 포, 슬:</b> 국적조건이 있음.
<b>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b> (시청각서비스 제외)	
<b>A. 엔터테인먼트서비스</b>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b>프:</b> 관리 기능에 대한 접근을 위해 인가가 필요함. 2년을 초과하는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인가는 국적조건을 조건으로 함.
<b>16. 운송서비스</b>	
<b>A. 해상운송</b>	
<b>a) 국제여객운송</b>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b>b) 국제화물운송</b> (국가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b>유:</b> 선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오:</b> 경영 이사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D. 도로운송</b>	
<b>a) 여객운송</b> (CPC 7121 및 CPC 7122)	<b>오:</b>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및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덴:</b> 관리자에 대하여 국적조건 및 거주요건이 있음. <b>불, 물:</b> 국적조건이 있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b>b) 화물운송</b>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sup>13)</sup> )	<b>오:</b>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및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불, 물:</b> 국적조건이 있음.
<b>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sup>14)</sup></b> (CPC 7139)	<b>오:</b>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17. 운송 부수 서비스<sup>15)</sup></b>	
<b>A. 해운 부수 서비스</b> <b>a) 해운화물취급서비스</b> <b>b) 창고업서비스</b> (CPC 742의 일부) <b>c) 통관서비스</b> <b>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b> <b>e) 해운대리업서비스</b> <b>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b> <b>g) 선원포함 선박임대</b> (CPC 7213) <b>h) 예선서비스</b> (CPC 7214) <b>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b> (CPC 745의 일부) <b>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제외)</b> (CPC 749의 일부)	<b>오:</b> 경영 이사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불, 물:</b> 국적조건이 있음. <b>덴:</b>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있음. <b>그:</b> 통관서비스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이:</b> “특허 해운대리업자( <i>raccomandatario marittimo</i> )”에 대해 거주요건이 있음.

13) CPC 71235의 일부로서 통신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14)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15)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유보 사항의 기술
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 d) 운영자 포함 상업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을 대표할 자격 있는 자 및 주식보유자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불, 몰: 국적조건이 있음.
F.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 <sup>16)</sup>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외의 상품의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오: 경영 이사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9. 에너지서비스	
A.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sup>17)</sup>	술: 거주요건이 있음.
20. 기타 서비스	
a) 세탁 및 염색서비스 (CPC 970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b) 머리카락서비스 (CPC 97021)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d)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sup>18)</sup> (CPC ver. 1.0 97230)	유: 전문가 및 대졸연수생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16)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17)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지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빗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프레스 펌핑), 스티물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않음.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않음.

18)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